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0. 2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년 10월 14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4년 10월 16일
- 라. 상정일자 :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4.10.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박문희)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도로명 주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의 條文(조문)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별지 제8호 ➔ 별지 제14호 (안 제3조제1항)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조문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함.
-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르면 건물 등에 부착된 건물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건물의 소유주 등은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한 경우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 중 제8호 서식이(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제14호 서식으로 변경되었기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문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0 호
----------	--------

제출연월일 : 2014.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도로명주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의 條文(조문)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별지 제8호 ➔ 별지 제14호 (안 제3조제1항)

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8.28 ~ 9.17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제2조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 을 “별지 제14호서식”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에 의하여 설치” 를 “설치” 로 한다.

제16조의2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를 “구”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을 “(위원의 임기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회에 한하여” 를 “두 차례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을 “위촉 해제”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 를 “그 밖”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 “제17조제3항에 따라”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으로 한다.

제23조 중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로 한다.

제24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시행에</u>----- -----.</p> <p>제2조(적용범위) ----- ----- ----- ----- ----- ----- ----- <u>따른다.</u></p> <p>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 ----- ----- ----- ----- ----- ----- ----- ----- ----- ----- ----- ----- ----- ----- ----- <u>별지 제14호서식</u>----- -----.</p>

현행	개정안
<p>②、③ (생략)</p> <p>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p> <p>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제16조의2(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1. 2. (생략)</p> <p>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p> <p>4. (생략)</p> <p>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p> <p>① ----- ----- 설치-----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실비변상) ----- ----- 범위-----.</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구----- -----</p> <p>4. (현행과 같음)</p> <p>제18조(위원의 임기 등) ① ----- ----- --- 두 차례만-----.</p> <p>② -----</p>

현 행	개 정 안
<p>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u>해촉</u>할 수 있다.</p> <p>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u>기타</u>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p> <p>2. 3. (생략)</p> <p>③ <u>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p> <p>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4조(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 ----- <u>위촉 해제</u>----- -----</p> <p>1. ----- <u>그 밖</u>----- -----</p> <p>2. 3. (현행과 같음)</p> <p>③ <u>제17조제3항에 따라</u>----- ----- ----- -----.</p> <p>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u>긴급한</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수당 등) ----- ----- <u>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u> 수당과 <u>그 밖에</u>----- -----.</p> <p>제24조(규칙) ----- <u>시행에</u>----- -----</p>